부 록

#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 운영규칙

## 1992. 7

제 1 조(명칭)본 협의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협의회는 건설산업재해예방과 건설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환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자격)협의회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2. 건설업 안전관리자
3.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자격이 있는자.

제 4 조(사무소)협의회 사무소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둔다.

제 5 조(사업)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
2.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
3. 건설안전관리자 자질 향상
4. 노동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정책건의에 관한사항
5. 협회 정관에 관련된 사업
6.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6 조(임원)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5인
3. 감사 2인
4. 운영위원 30인

제 7 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이하 협회회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며 회장유고시 협회 상근부회장이 대행한다.
2.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단, 임원은 협회회원 및 협의회에 가입한지 만1년 이상인 자로 하며 첫회는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협의회 회원이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은자로 한다.

단 첫회는 발기인 대회에서 인준 받은자로 한다.

4. 임원의 결원이 발생시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 8 조(임원의 직무)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부위원장중 1인이 지정회무를 담당하게 한다.
3.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집행 상황 및 회계업무를 매 회계년도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9 조(임기)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 조(총회)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장 1/3이상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요구할 때
   3)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의원 선출은 협의회 회원의 추전과 운영위원의 의결로 선임한다.
5.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대의원수는 70인 내로 한다.

제 11 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운영위원회 의결은 위원과 과반수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사무국)협의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요원 조직 및 직무는 위원장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보수등에 관한 규정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재정)협의회 재정 및 회계년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1월－12월말까지로 한다.
2. 본 건설안전관리자협의회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 2만원(단, 협회 회원의 경우 가입비는 면제한다)
   (2) 월회비 : 2만원

제 14 조(기타)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본 협회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첫회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와 일치되게 95년 12말까지로 한다.
2. 첫회 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발기인대회에서 승인된 92. 7. 7부터 시행한다. ⊗